

부산고등법원 2016. 5. 18 선고 2015나5232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이행청구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16. 5. 18 선고 2015나52329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5. 4. 30 선고 2014가합46825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1. B

2. C

피고, 항소인3. D

변론 종결2016. 2. 3.

판결 선고2016. 5. 18.

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5. 4. 30. 선고 2014가합4682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B,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이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 B, C는 피고 D에게,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. 12. 4. 접수 제81584호로 마친 지분 4/27 소유권이전등기 중 11/135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/15 지분에 관하여 2009. 11. 30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C는 원고에게 1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금전지급부분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판결 중 피고 B,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 B,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.

나. 피고 D

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,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 및 피고 D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, 위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원고가 새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, 2, 제5호증, 제6호증의 1,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피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,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).

[고쳐 쓰는 부분]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『그런데 ... 의무가 있다.』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『그런데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의 몫으로 1,600만 원(= 8,000만 원 ÷ 5)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인 5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, 피고 C는 원고에게 나머지 1,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,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,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, 원고의 피고 B,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손지호

판사문상배

판사반병동

별지